

●동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6-1호

「어선법」 제21조(어선의 검사)를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2026년 09월 18일  
동해어업관리단장

행정처분 통보 공고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처분 제목       | 「어선법」 위반 관련 출항정지명령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당사자         | 성명(상호)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*숙(제5동해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14번길 17, 이하생략<br>*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처분 이유       | 어선검사 미수검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처분 내용       | 출항정지(어선검사증서 발급 시 출항정지명령 해제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| 「어선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처분 기관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해어업<br>관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서명 | 어업<br>지도과 | 담당자 | 노지영      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,<br>동해어업관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전화  | 051-410-1092 |
|             | 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njyoung@korea.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팩스  | 051-410-1046 |

<유의사항>

1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에

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3. 「어선법」 제44조(벌칙)에 따라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끝.